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747 |
|----------|-----|

2021. 6. 23.(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6월 9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계획의 수립,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여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세부 내용들을 명시함(안 제4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 된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 신설(안 제6조)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도내 중소농, 고령농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단합하도록 역량을 키워주며,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내 농촌융복합산업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계획 수립 사항, 창업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수, 매출액

| 구분 | 계 | '21년 | '20년 | '19년 | '18년 | '17년 | '16년 이전 |
|----------|-------|------|-------|-------|------|------|---------|
| 인증업체수 | 131 | 3 | 17 | 17 | 19 | 12 | 63 |
| 매출액(백만원) | 4,569 | - | 1,373 | 1,311 | 929 | 802 | 154 |

※ 전국 인증사업자 : 1,924개소

• 시군별 현황

| 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
| 131 | 32 | 14 | 9 | 13 | 6 | 18 | 2 | 9 | 10 | 11 | 7 |

나. 주요 검토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괄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 <u>제1조(목적)</u> ↳ 근거법 명시 |
| 제2조(정의) | <u>제2조(정의)</u> ↳ 상위법에 맞춰 내용 수정 충북지역 농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적 제한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개정 제4조 | <u>제3조(도지사의 책무)</u> ▶ 신설 ↳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
|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 개정 제5조 | <u>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사항 구체적 명시 |
| 제5조(판로지원) → 개정 제8조 | <u>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u> ↳ 지원센터 수행 사업 구체적 명시 |
| 제6조(공동사업지원) → 개정 제7조 | <u>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u> ▶ 신설 ↳ 창업·육성 지원 내용 |
| 제7조(연구·개발지원) → 개정 제9조 | <u>제7조(공동사업 지원)</u> ↳ 내용정비 |
| 제8조(응자) ▶ 삭제 ↳ 제6조(창업 및 육성지원)사업에 근거 명시 | <u>제8조(판로지원)</u> ↳ 내용정비 |
| 제9조(전문교육) → 개정 제10조 | <u>제9조(연구·개발)</u> ↳ 내용정비 |
| 제10조(시행규칙) → 개정 제11조 | 제10조(전문교육) 제11조(시행규칙) |
| 부칙 | 부칙 |

- 안 제3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안 제4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도는 지난 2015. 3월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기획판매전, 안테나숍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 지원센터 지정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센터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수행업무]

- ①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
-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④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 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 ⑥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현황]

- 운영기관 : 충북연구원(충북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지정기간 : '21. 1월 ~ '23. 12월 * 최초지정 : '15. 3월
- 근무인원 : 6명

| 구분 | 계 | '20년 | '19년 | '18년 | '17년 | '16년 이전 |
|----------|-----|------|------|------|------|---------|
| 현장코칭(건) | 915 | 245 | 205 | 194 | 156 | 115 |
| 안테나숍(개소) | 5 | 5 | 4 | 4 | 3 | 2 |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 된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 신설(안 제6조)
 - 농업인 등에게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경영전략·마케팅 상담,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설에 관한 지원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다. 종합 검토의견

-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1차 산업),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의 위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촌의 새 활로가 되고 있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창업 및 체계적인 육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충청북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4.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자원 배분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내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경영전략·마케팅 등의 상담

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설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연구·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시·도계획”은 “시·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⑦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